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14568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○○시장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
담당변호사 안○○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○○

2. ○○시장

3. ○○광역시 ○○구청장

참가행정청 ○○○○부장관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. 7. 17. 선고 2023구합68754 판결

변 론 종 결 2025. 7. 16.

판 결 선 고 2025. 8. 2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1행부터 표 아래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라. 피고 ○○광역시 ○○구청장은 2021. 8. 30. 원고에게 원고가 B의 주식 100%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B가 소유한 ○○ ○○구 V 외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, 2021. 10. 8.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1과 같이 합계 891,369,480원(가산세 포함)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.

마. 피고 ○○시장은 원고에게 원고가 C의 주식 100%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C가 소유한 ○○시 Q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, 과세예고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. 1.



12. 공시송달을 거쳤고, 이후 2022. 3. 3.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2와 같이 합계 357,907,710원(가산세 포함)¹⁾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.

바. 피고 ○○시장은 원고에게 원고가 C의 주식 100%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C가 소유한 R, S, W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, 2022. 5. 13.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3과 같이 합계 963,289,640원(가산세 포함)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.』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는,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, 원고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고, 위 주식의 명의가 원고에게로 전환된 2019년경에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.²⁾

나.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최초의 주주였던 D, I, H, J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, 원고는 2019년경, ① E, H, G으로부터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사유로 X의 주식 200주 중 140주를, ② M, N, O로부터 C의 주식 10,000주 전부를 각 이전받아 보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, 그러한 사실만으로는, 위 주주들이 원고와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, 그 이전에 수차례의

1) 피고 ○○시장은 합계 361,337,960원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나(피고 ○○시장의 2023. 9. 25.자 준비서면 제3면) 오히려 보인다(갑 제4호증의 1, 을가 제1호증의 2 참조).

2) 원고는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,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.



주식의 양도가 있었기 때문에,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이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,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, 주식명의신탁해지 약정서, 원고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임○○

판사 나 ○

판사 송○○



별지

부과처분 내역

순번	피고	부과일	세목	취득세(원)	농어촌특별세(원)	합계(원)
1	○○광역시 ○○구청장	2021. 10. 8.	본세	610,161,380	61,016,130	671,177,510
			가산세	211,268,370	8,923,600	220,191,970
2	○○시장	2022. 3. 3.	본세	240,735,670	24,073,560	264,809,230
			가산세	89,012,000	4,086,480	93,098,480
3	○○시장	2022. 5. 13.	본세	633,623,980	63,362,390	696,986,370
			가산세	253,766,390	12,536,880	266,303,270
						2,212,566,830